

의안번호	2203333
의 퇴 인	허영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0.
추계번호	24A3399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5,92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조 9,642억원(연평균 5,928억원)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, 설치 면적 및 설비 용량, 설치 단가 등이 본 추계의 전제와 다를 경우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 - 현재 가용한 주차장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주차장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(안 제12조의2 신설)	5,928	5,928	5,928	5,928	5,928	29,642	5,928

- 주: 1. 개정안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, 설치 면적 및 설비 용량, 설치 단가 등이 본 추계의 전제와 다를 경우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 2. 현재 가용한 주차장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주차장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 (주차장의 신· 재생에너지 설 비 설치 의무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(제1항) ○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50% 이상의 면적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함(제2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장 이외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의2 (주차장의 신· 재생에너지 설 비 설치 의무)	○	○ 제1항과 관련하여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”은 현재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함 ○ 제2항과 관련하여 향후 설치될 “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”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○ 제3항과 관련하여 “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”은 현재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현재 가용한 주차장¹⁾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함

- 안 제12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

1) 「주차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장”은 현재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(주차면수 80대 초과)으로 한정함

- 안 제12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향후 설치될 “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”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안 제12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“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”은 현재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민영 노외주차장(주차면수 80대 초과)으로 한정함

□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해당 주차장에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의 종류, 설치 면적 및 설비 용량, 설치 단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, 본 추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제함

- 첫째, 신·재생에너지의 종류는 태양광으로 가정함
- 둘째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면적은 해당 주차장 면적의 50%로 하며, 설비 용량은 해당 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셋째, 단위 면적 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단위 용량 당 설치 단가는 최근 주차장 태양광 설치 공사 사례 등의 평균값을 반영함
- 넷째,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은 2024년도 예산상 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” 사업의 태양광 지원 비율(44%)로 가정함²⁾

□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의 기간, 관련 예산의 편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균분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2) 개정안과 유사한 제21대국회의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119963)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는 2023년도 예산상 지원 비율(47%)을 기준으로 하였음

-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수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취합한 주차장 통계(2022년 말 기준)에 근거하여 추정함
 - － 추계기간 동안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폐지되거나 신설될 수 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음
 - 현재 신·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중 주차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개정안의 주차장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이는 고려하지 않음
-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차장 통계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, 2022년 말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수는 총 2,183개(9,501,187㎡), 민영 노외주차장 수는 총 399개(2,218,288㎡)임³⁾
- 안 제12조의2제1항은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”하도록 하고 있는데, 안 제12조의2제2항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의 50% 수준으로 가정함
- 단위 면적 당 태양광 설비 용량(0.25kW/㎡)과 단위 용량 당 설치 단가(2.26백만원/kW)는 최근 주차장 태양광 설치 공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정함
- 참고 사례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“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”(2018년, 400㎡, 100kW, 3억 1,500만원), 당진시의 “당진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”(2022년, 400㎡, 100kW, 2억 400만원) 등임⁴⁾
 - 동 사례에 근거할 경우 단위 면적 당 태양광 설비 용량의 평균은 0.25kW/㎡, 단위 용량 당 설치 단가의 평균은 2.60백만원/kW임
 - 다만,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” 사업의 태양광 설치 단가(건물지원)가 1.6백만원/kW 수준임을 고려하여 추계에 반영한 단가는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사례의 평균인 2.26백만원/kW으로 가정함⁵⁾

3) 주차장 면적 자료가 있는 주차장에 한함

4) 동 사례들은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, <https://www.g2b.go.kr>)의 입찰 공고 중 최근 5년 동안의 공사 중 유사사례를 검색한 것이며, 설치 공사 관련 자료는 해당 지자체의 제출자료에 근거함

5) 개정안과 유사한 제21대국회의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119963)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는 지자체의 평균 단가만을 고려하여 2.6백만원/kW으로 가정하였

- 공영 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, 민영 주차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비용의 44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민영 주차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비율은 현행 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” 사업의 태양광 지원 비율(44%)로 가정함
-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5,928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2조 9,642억원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, 설치 면적 및 설비 용량, 설치 단가 등이 본 추계의 전제와 다를 경우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 - 현재 가용한 주차장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주차장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	5,928	5,928	5,928	5,928	5,928	29,64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음. 2023년 예산상 산업통상자원부의 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” 사업의 태양광 설치 단가(건물지원)는 2백만원/kW 수준이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